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23. 5. 17.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1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3
1. 세입·세출결산	3
2. 기금의 결산	5
3. 재무제표	6
4. 채권·채무결산	6
5. 재산의 결산	7
6. 금고의 결산	8
7. 성과보고서	9
III. 개선 및 권고사항	10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10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3
3. 기금에 관한 사항	66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70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71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6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I.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부산광역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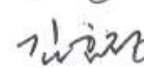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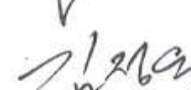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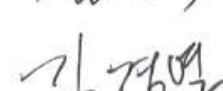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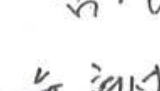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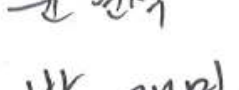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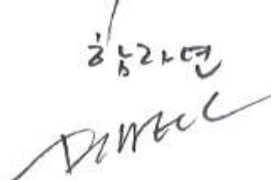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하여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 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윤 일 현	
위원	김 효 정	
위원	양 준 모	
위원	김 정 옥	
위원	김 경 열	
위원	윤 현 석	
위원	박 재 민	
위원	배 병 훈	
위원	박 금 주	
위원	김 재 현	
위원	함 라 연	
위원	백 범 수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6,908,856	17,062,006	15,895,848	586,093 (34,058)	16,966	563,099
일반회계	13,330,541	13,494,189	12,647,184	353,554 (34,058)	16,913	476,538
공 기 업 특별회계	942,451	929,510	739,958	145,019		44,533
기 타 특별회계	2,635,864	2,638,307	2,508,706	87,520	53	42,028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나. 세입결산

2022회계연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6,908,856	17,329,090	464,070 (2.7)	17,062,006 (98.5)	37,709 (0.2)	229,375 (1.3)
일반회계	13,330,541	13,701,397	451,322 (3.3)	13,494,189 (98.5)	32,466 (0.2)	174,742 (1.3)
공 기 업 특별회계	942,451	944,677	2,238 (0.2)	929,510 (98.4)	220 (0.0)	14,947 (1.6)
기 타 특별회계	2,635,864	2,683,016	10,510 (0.4)	2,638,307 (98.3)	5,023 (0.2)	39,686 (1.5)

※ ()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다. 세출결산

2022회계연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6,312,905	16,908,856	15,895,848 (94.0)	620,151 (3.7)	20,257 (△3,291)	372,600 (2.2)
일반회계	12,963,368	13,330,541	12,647,184 (94.9)	387,612 (2.9)	20,074 (△3,161)	275,671 (2.1)
공 기 업 특별회계	774,425	942,451	739,958 (78.5)	145,019 (15.4)		57,474 (6.1)
기 타 특별회계	2,575,112	2,635,864	2,508,706 (95.2)	87,520 (3.3)	183 (△130)	39,455 (0.2)

※ ()내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비율이며, 보조금반납금()는 교부차액임.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7,062,006	15,895,848	1,166,158	586,093 (34,058)	16,966	563,099
일반회계	13,494,189	12,647,184	847,005	353,554 (34,058)	16,913	476,538
공 기 업 특별회계	929,510	739,958	189,552	145,019		44,533
기 타 특별회계	2,638,307	2,508,706	129,601	87,520	53	42,028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2. 기금의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번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031,914	41,854	1,207,751	1,165,897	1,073,768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9	148,858	742,278	593,420	151,367
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050	280	2,292	2,012	1,330
3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2,290	△17,468	1,532	19,000	14,822
4	중소기업육성기금	162,522	△10,525	44,888	55,413	151,997
5	투자진흥기금	156,229	△10,482	4,510	14,992	145,747
6	남북교류협력기금	9,397	219	219		9,616
7	자활기금	10,246	△33	394	427	10,213
8	재해구호기금	38,142	△24,758	199,806	224,564	13,384
9	식품진흥기금	14,621	△202	1,795	1,997	14,419
10	환경보전기금	14,918	2,661	5,340	2,679	17,579
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21	237	3,437	3,200	1,158
12	재난관리기금	80,171	△48,756	46,458	95,214	31,415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83,768	4,964	13,096	8,132	188,732
14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86,251	△10,263	3,006	13,269	75,988
15	문화진흥기금	104,776	△28,754	4,379	33,133	76,022
16	체육진흥기금	56,204	13,156	14,444	1,288	69,360
17	지역개발기금	76,977	21,703	118,860	97,157	98,680
1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922	1,017	1,017		1,939

3.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결과
2022년	48,423,604	5,059,751	43,363,853	13,754,707	14,165,808	△411,101
2021년	47,913,674	5,189,463	42,724,211	13,576,770	13,645,794	△69,024
증감	509,930	△129,712	639,642	177,937	520,014	△342,077

4. 채권·채무결산

가. 채권

채권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 계		83,517	20,430	14,249	89,698	5,296	84,402
일반회계		46,157	4,198	5,058	45,297	5,296	40,001
특별회계	소계	18			18		18
	공기업특별회계	18			18		18
	기타특별회계						
기금	소계	37,342	16,232	9,191	44,383		44,383
	중소기업육성	33,168	14,826	7,562	40,432		40,432
	자 활	385	300	300	385		385
	식 품 진 흥	3,789	1,106	1,329	3,566		3,566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나. 채무

채무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B)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D)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227,469	△68,872	407,344	476,216	-	3,158,597
지 방 채 증 권	2,449,504	△152,998	244,744	397,742	-	2,296,506
차 입 금	776,975	85,116	162,600	77,484	-	862,091
채무부담행위	990	△990		990	-	

* 당해연도말 현재액(D) = 전년도말 현재액(A) + 당해연도 증감액(B) + 조정액(C)

5. 재산의 결산

가. 공유재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용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29,403,890	2,826,337	2,947,117	120,780	32,230,227
행정 재산	소 계	28,874,378	518,103	588,571	70,468	29,392,481
	공 용 재 산	11,144,114	142,139	154,345	12,206	11,286,253
	공 공 용 재 산	16,716,554	375,627	431,079	55,452	17,092,181
	기 업 용 재 산	941,150	245	3,055	2,810	941,395
	보 존 용 재 산	72,560	92	92		72,652
일 반 재 산		529,512	△35,177	15,135	50,312	494,335
건설중인재산(※신설)			2,343,411	2,343,411		2,343,411

나. 물품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의 취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158	131,486	517	8,343	△109	△2,795	408	5,548	4,566	137,034

※ 작성대상 물품 : 58종 정수물품(49종 정수물품 보유)

※ 미보유 정수물품 : 조연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분무기탑재차 9종

6. 금고의 결산

2022회계연도 금고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2)	수입액(1)	지출액(2)	
합계(A+B+C)	2,328,470	1,208,012	18,269,756	17,061,744	2,239,926
일반회계소계(A)	974,445	847,005	13,494,189	12,647,184	847,005
특별회계소계(B)	322,111	319,153	3,567,816	3,248,663	319,153
공 기 업	196,172	189,552	929,509	739,957	189,552
기 타	125,939	129,601	2,638,307	2,508,706	129,601
기 금 소 계 (C)	1,031,914	41,854	1,207,751	1,165,897	1,073,768

7. 성과보고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제4호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현년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33	238	452	58	360	34	15,155,890	14,695,899	459,991

※ ‘초과달성’이란 목표대비 130% 이상 달성, ‘달성’이란 100%이상 130% 미만 달성, ‘미달성’이란 100% 미만의 달성도를 보인 경우로 구분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1)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지방세										
	보통세	4,926,600	57,464	1.2%	4,781,177	50,769	1.1%	4,544,328	45,161	1.0%
	목적세	594,120	12,819	2.2%	591,742	10,998	1.9%	574,739	10,895	1.9%
	지난년도 수입	112,716	80,580	71.5%	99,340	81,404	81.9%	122,352	80,862	66.1%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7,414	163	2.2%	3,132	289	9.2%	1,942	128	6.6%
	사용료 수입	51,905	1,858	3.6%	56,679	2,261	4.0%	55,640	3,330	6.0%
	수수료 수입	24,191	214	0.9%	23,397	252	1.1%	24,410	115	0.5%
	사업수입	3,860	27	0.7%	35,443	11	0.0%	41,240	32	0.1%
	징수교부금 수입	4,313	-	0.0%	4,639	-	0.0%	3,879	-	0.0%
	이자수입	18,319	35	0.2%	9,208	113	1.2%	8,279	56	0.7%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20,446	-	0.0%	20,179	398	2.0%	37,972	-	0.0%
	자치단체간 부담금	10,585	3	0.0%	2,147	-	0.0%	2,501	48	1.9%
	보조금 반환수입	70,167	1,890	2.7%	80,675	2,409	3.0%	-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66,431	3,978	6.0%	69,842	1,358	1.9%	135,049	1,833	1.4%
	지난연도 수입	19,676	13,823	70.3%	18,728	14,115	75.4%	18,235	14,119	77.4%
	과징금 및 과태료등	-	-	-	-	-	-	5,549	2,308	41.6%
	과징금	204	76	37.3%	320	40	12.5%	-	-	-
	이행강제금	514	455	88.5%	520	408	78.5%	-	-	-
	변상금	3,116	878	28.2%	2,934	1,216	41.4%	-	-	-
	과태료	1,149	228	19.8%	1,192	259	21.7%	-	-	-
	환수금	193	146	75.6%	38	9	23.7%	-	-	-
	부담금	91	9	9.9%	9	9	100%	-	-	-

2021회계연도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 ‘과징금및과태료등’ 항목으로 하여 일괄 표시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을 새로이 신설하고 하부항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을 두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대비 7,69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또한 636백만원 증가하여 총 8,328백만원 (5.0%)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징수결정액의 증가로 인하여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2.9%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비율은 71.5%로 전기대비 10.4%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환급액의 감소로 인하여 실제 수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무재산	33,272	19.04%	33,082	19.89%	33,685	21.20%
행방불명	3,589	2.05%	2,828	1.70%	3,370	2.12%
납세태만	24,122	13.80%	30,741	18.48%	33,714	21.2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64	0.09%	1,415	0.85%	1,301	0.8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748	1.57%	1,690	1.02%	604	0.38%
폐업 또는 부도	13,226	7.58%	12,304	7.40%	10,622	6.68%
자금압박	72,122	41.28%	57,919	34.82%	55,926	35.19%
기 타	25,498	14.59%	26,344	15.84%	19,694	12.39%
합 계	174,741	100.00%	166,323	100.00%	158,916	100.00%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 원인분석 결과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미수납의 사유는 자금압박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무채산과 납세태만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보면,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5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하며, 과거 회계 결산 결과를 확인해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의 경우 납세자의 의지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납부가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에서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수행할 경우 무채산,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와 달리 수납율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세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할 경우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의 미수납 요인 중 납세태만(29.8%)과 자금압박(43.1%)이 총 72.9%로 전체 미수납액의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의 비중인 55%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자가 자산 및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외수입에 관한 사항

1) 현황

2022회계연도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65,382백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87,307백만원의 34.9%에 달할 정도로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외수입의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 또는 불용재산 매각대금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각종 사용료의 경우에도 사용료 수입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리시설사업소의 그외수입 중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부금' 3,035,660천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대형마트에서 부산광역시 소유의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 성격의 금액으로 이는 그외수입이 아닌 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 과목의 변경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광역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서의 특성상 예산편성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오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체육관리시설사업소의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관련 그외수입 금액은 매년 30억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그외수입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도 연 50억 원 가량의 관리비 수입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전부 그외수입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수수료수입 등 관리항목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 회계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각 부서에서 수행한 세입과목 처리를 검토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수입 항목은 정보이용자가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항목으로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그외수입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세입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 현황

지방세 세입은 징수액이 결정되고 징수부과 후 징수로 인하여 과세권이 종결되고 부산광역시의 수입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세입 결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미수납금액 발생하는 경우 각 미수납 사유별로 금액을 집계하고 사후적으로 징수활동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과세권이 없어질 경우 불납결손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결손처분이 크게 발생하여 결손처분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도의 경우 32,466백만원으로 2020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의 미수납액이 2020년도 대비 37,822백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금액은 2020년 대비 감소한 점은 미수납액 중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비용 발생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결손처리를 한 후에도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2022년도 결손취소 후 징수금액은 40억원이며, 이는 2021년도 결손취소 후 징수금액인 63억원 대비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배분금액 부족	1,541	4.75%	3,326	4.63%
채납처분 중지	138	0.43%	176	0.25%
시효소멸	4,149	12.78%	3,042	4.24%
행방불명	701	2.16%	602	0.84%
무재산	14,882	45.84%	56,136	78.2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17	0.05%	142	0.20%
평가부족액	10,823	33.33%	8,288	11.55%
기타	215	0.66%	62	0.09%
합 계	32,466	100.00%	71,774	100.00%

2022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 원인분석 결과 무재산, 평가부족액, 시효소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2021년도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2022년도와 2021년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과 평가부족액 금액은 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압류 및 독촉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미수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채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손취소 후 징수된 금액은 2021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면 결손취소 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4) 보조금 반환수입에 관한 사항

1) 현황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의 징수결정액과 환급결정액은 각각 70,167백만원의 징수결정액과 1,890백만원의 환급결정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08백만원(13.0%) 감소하였으나, 환급결정액은 749백만원(65.6%)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나누어 지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경우 부산광역시 소재 구·군에 지급한 보조금 중 반환되는 금액이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부산광역시 소재 구·군 이외의 산하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중 정산과정을 거친 후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적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선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후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며, 보조금반환금이 발생하는 금액은 보조금 교부액에 대비해 그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총 금액이 7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보조금의 지출이 지자체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의 실정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결산 시에도 보조금반환수입이 과도한 발생에 대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조금의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그 이유를 두었으나, 2022년 코로나19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도 보조금반환수입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시 수령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필요한 지자체 및 기관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급 결정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는 자원순환과와 미래기술혁신과 등에서 그외수입으로 부과하여야 할 세입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부과한 후 이를 환급하고, 그외수입으로 재부과함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반환수입(223)항을 신규로 신설할 정도로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반환수입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일 것을 권고 드립니다.

(5) 공유수면사용료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공유수면 사용에 대하여 공유수면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특정업체(주식회사 마스텍중공업, 이하 '마스텍중공업' 이라고 함)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남향관리사업소의 공유수면사용료 미수납액은 269,426,160원이며 대부분 마스텍중공업에 대한 미수납금액이며, 2022. 12. 31. 현재 공유수면사용료 중 마스텍중공업에 대한 미수납금 잔액은 총 435,549,020원입니다.

연도별 마스텍중공업에 대한 공유수면사용료 부과금액과 납부액 미수납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연 도	부과액	납부액	미수납 잔액
2016	237,709,190	169,994,240	67,714,950
2017	288,417,840	192,525,200	163,607,590
2018	355,336,440	81,664,290	437,279,740
2019	389,171,360	81,943,300	744,507,800
2020	301,833,070	-	1,046,340,870
2021	308,327,100	743,389,200	611,278,770
2022	425,361,450	601,091,200	435,549,020

2020. 12. 31. 현재 미수납 잔액은 10억 원이 넘었으나, 2021년과 2022년 일부 상환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자 2021년 7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이며, 2021년도에도 추가적인 미수납액 발생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재차 실시하자 2021년과 2022년에 미수납액을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남향관리사업소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별표2에 따라 공유수면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마스텍중공업은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모두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2의 1호를 적용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3%를 부과하였으나,

마스텍중공업은 현재 선박의 건조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2의 1호가 아닌 2호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의 납부를 주장하면서 공유수면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마스텍중공업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2022. 3. 1.부터 '선박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즉시 허가변경을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위 시행규칙 별표2의 2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마스텍중공업의 편의를 주었으나,

마스텍중공업은 오히려 2022. 8. 17. 2016년도부터 시행규칙 별표2의 2호를 적용하여 공유수면사용료를 산정, 기납부한 공유수면사용료의 반납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 3. 23. 마스텍중공업은 해당 소송이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유수면사용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마스텍중공업은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이 있을 때마다, 미수납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허가의 취소를 피하고 있으며, 마스텍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부가율을 낮게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마스텍중공업은 오히려 소송을 통하여 해당 부가율을 소급 적용하여 공유수면사용료의 반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청문실시, 소송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액 총액은 2,040,731,000원인 상황에서 마스텍중공업에 공유수면사용료 미수납액은 435,549,020원이므로 그 비중이 상당하므로 마스텍중공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미수납액 징수를 권고 드립니다.

(6)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

1) 현황

투자유치과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징수결정액은 514,46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55,512,000원으로 미수납율이 88.54%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율이 상당합니다.

또한, 예산현액은 55,000,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 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12월 중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었고 미수납액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부과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469,469,000원이며, 2023. 5. 9. 현재 미수납액은 316,420,000원으로 수납율은 32.6%에 불과하며, 지난년도수입에 포함된 과거년도 미수납액을 고려할 경우 총 미수납액은 9억 원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연도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천원)

구분	부과		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이전	143	242,870	1	14,097	142	228,773
2017년	8	36,127	-	-	8	36,127
2018년	6	31,631	1	1,307	5	30,324
2019년	13	39,267	2	8,021	11	31,246
2020년	30	143,468	11	53,572	19	89,896

구분	부과		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136	408,261	103	194,149	33	214,112
2022년	178	469,469	76	153,049	102	316,420
합계	514	1,371,093	194	424,195	320	946,898

공시지가 및 불법건축물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부과금액은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의 관리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은 해당 구·군에서 담당하지 않고 부산광역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불법건축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미수납액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압류와 독촉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미수납액이 크지 않아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의 체납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재산을 이유로 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파견인원을 증가시켜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건축물의 실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시점 또한 대부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결산시점마다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초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철거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동일한 시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예산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예산금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방지와 세출 또한 계획성 있게 이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7) 부정이의환수금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22년도에 예산현액이 없던 부정이의환수금 144,280,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전액 징수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2015~2017년 중 녹색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조명 주식회사(이하 '○○조명'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함)에 집행된 보조금액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및 과태료 금액입니다.

2017. 11월경 위 ○○조명과 ○○○○테크의 실 운영자인 ○○○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로 고발되었으며, 2018. 3월경 해당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집행자인 부산테크노파크는 2018. 5월 위 법인의 법인통장을 채권으로 가압류하였고, 피고발인인 ○○○은 부산지방법검찰청에서 횡령 및 사기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후 2020. 12월경 판결(징역2년_대법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2021. 6월경 최종 판결문을 받았으며, 부산테크노파크에서 2021.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주소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2년 중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환수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조명과 ○○○○테크는 2018. 12. 31, 2020. 11. 30. 각각 폐업하였기에 실 소유자 ○○○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두 법인 모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환수금 및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사건이 이첩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두 법인의 사업비 지급 계좌만 가압류 조치를 하였으나 계좌에 남은 금액이 없고, 일정 가압류 기간 잔고의 변동이 없어 가압류가 해제되어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보조금 수령자의 금융정보와 등기기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용되어 잔고가 없는 사업비 지급 계좌에 대하여만 가압류 조치를 하여 채권의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였다면, 구속된 ○○○의 주소지 및 재산의 파악이 가능하여, 부정이익환수금의 부과와 ○○○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하여 채권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연간 수 백억원의 보조금이 산하기관 및 구·군 등 지자체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부정이익을 최종적으로 환수 받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의혹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통한 채권확보와 부정수급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신속하게 과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현액(A)	13,330,541	12,968,088	11,852,367	9,827,683	9,141,496
세출결산액	12,647,184	12,277,395	11,495,801	9,445,026	8,740,233
이 월 액(B)	387,612	367,173	233,100	240,398	268,785
증감액	20,439	134,073	-7,298	-28,387	-75,448
비율(B/A)	2.91%	2.83%	1.97%	2.45%	2.94%
보조금반납금(C)	20,074	33,189	55,121	20,419	16,823
증감액	-13,115	-21,932	34,701	3,596	14,647
비율(C/A)	0.15%	0.26%	0.47%	0.21%	0.18%
집행잔액(D)	275,671	290,331	68,345	121,840	115,655
증감액	-14,660	221,986	-53,495	6,185	43,208
비율(D/A)	2.07%	2.24%	0.58%	1.24%	1.26%
계(E=B+C+D)	683,357	690,693	356,566	382,657	401,263
비율(E/A)	5.13%	5.33%	3.01%	3.89%	4.38%
순세계잉여금	476,538	594,992	620,232	175,760	160,838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62,453백만원(2.79%)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69,789백만원(3.01%)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76,53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454백만원 감소하였고,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405,672백만원 대비 70,86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275,671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7%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1.48%에 비해 0.59% 증가하였으며, 전년도(1.01%) 대비 0.4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당초예산		11,128,167	10,341,851	9,708,815
제1회 추경예산	증감	1,288,627	1,001,622	224,996
	계	12,416,794	11,343,473	9,933,811
제2회 추경예산	증감	532,523	816,482	1,005,487
	계	12,949,317	12,159,955	10,939,298
제3회 추경예산	증감	-	532,537	409,735
	계	-	12,692,492	11,349,033
제4회 추경예산	증감	-	-	236,129
	계	-	-	11,585,162
간주예산	증감	14,051	42,496	26,807
	계	12,963,368	12,734,988	11,611,969
최종예산		12,963,368	12,734,988	11,611,969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116.49%	123.14%	119.60%

회계연도별로 매년 2회 이상 당초예산의 변경이 있었으며, 최종예산은 당초 대비 16%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액의 흐름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세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2회 이상의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당年度の 세입 및 세출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년도 간주예산 처리액은 전년도 대비 28,44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76,53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454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405,672백만원 대비 70,866백만원(17.47%)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는 본예산 수립 시 세입 규모를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지출잔액 과다 편성 및 발생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바, 이때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진행과정 및 투자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세출과 그와 관련된 필요한 세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연간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 당초예산의 세출로 편성하고 이후에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일부의 사업은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중단 및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연간 사업별 필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도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철저한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최소화하여야 세입과 세출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명시이월	196,993	225,062	147,633	142,299	122,271
증감액	-28,069	77,429	5,334	20,028	-40,567
사고이월	122,482	78,740	72,218	73,659	100,460
증감액	43,742	6,522	-1,441	-26,801	-40,441
계속비이월	68,137	63,371	13,249	24,440	46,054
증감액	4,766	50,122	-11,191	-21,614	5,560
합 계	387,612	367,173	233,100	240,398	268,785
증감액	20,439	134,073	-7,298	-28,387	-75,448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8,06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43,742백만원, 4,76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건수 및 자금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년			2021 년			2020 년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명시	142	164,431	32,562	148	224,062	1,000	113	124,912	22,721
사고	186	120,986	1,496	132	78,453	287	144	71,830	388
계속비	10	68,137	-	9	63,371	-	7	13,249	-
합계	338	353,554	34,058	289	365,886	1,287	264	209,991	23,109

당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금을 수반하는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자금없는 이월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발생건수 및 금액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발생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식만~사상 혼잡도로, 문화진흥기금 전출,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서면~사상 도시BRT 구축 지원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등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건설공사,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개설사업 등입니다.

주요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유
문화시설개관준비과	문화진흥기금 전출	27,000	25,000	-	지장물 이설로 인한 공사 지연
도 로 계 획 과	식만~사상 혼잡도로	27,260	24,090	259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한 사업절차 지연
도 로 계 획 과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16,400	-	9,516	준공시기 미도래
도 시 균 형 개 발 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	38,498	2,250	13,756	특별교부세 연말 교부에 따른 집행 불가 및 집행 시기 미도래
탄 소 중 립 정 책 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113,630	9,785	4,650	부품수급 지연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등
탄 소 중 립 정 책 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49,049	-	10,027	부품수급 지연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등
하 천 관 리 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11,968	11,100	281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지 산 학 협 력 과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8,990	-	6,969	준공시기 미도래
버 스 운 영 과	서면~사상 도시BRT 구축 지원	19,905	5,962	843	준공시기 미도래
버 스 운 영 과	저상버스 도입보조	17,169	-	5,690	반도체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차량 생산 지연
해 양 레 저 관 광 과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8,340	4,814	1,848	추가용역 시행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
해 양 수 도 정 책 과	STEM 빌리지 조성	7,888	4,900	560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관 광 진 흥 과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 사업(자본)	8,170	1,690	4,226	준공시기 미도래
건 설 본 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건설	5,850	5,850	-	추경 편성 및 환경단체 협의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부산근현대역사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1,679	600	4,727	준공시기 미도래
창 조 도 시 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영도)(경제공동체)	10,703	1,926	3,154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는 큰 변화가 없으며, 주로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기자동차 신차 출고지연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2022년	70건	4,906,571	1,524,867	115,489	237,371	106,828	459,688
2021년	66건	4,589,485	1,105,636	153,394	274,861	86,450	514,705
2020년	64건	4,506,107	1,256,638	146,693	189,211	4,808	340,712
2019년	54건	4,051,157	1,098,509	103,923	211,412	2,000	317,335
2018년	49건	3,469,723	1,419,598	145,873	216,173	18,509	380,555

2022년도의 장기사업 중 완료는 13건, 총사업비 163,131백만원이며,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 총사업비 1,433,800백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의 비중은 전기 13%에서 29%로 증가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으며,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반도체 부족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및 사전 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액의 과소로 이월되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확보 후 1년간 명시이월 후 그 다음연도에 다시 1년간 사고이월을 하여 관습적인 이월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 시 연말에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집행사유 미발생	2,261	0.82%	2,324	0.80%	8,417	12.32%
증감액	-63	-2.71%	-6,093	-72.39%	-28,071	-76.93%
예산절감	184	0.07%	30	0.01%	11	0.016%
증감액	154	513.33%	19	173%	-1,093	-99%
낙찰차액	1,177	0.43%	1,734	0.60%	898	1.31%
증감액	-557	-32.12%	836	93.10%	-94	-9.47%
지출잔액	143,542	52.07%	93,872	32.33%	36,218	52.99%
증감액	49,670	52.91%	57,654	159.19%	-4,743	-11.58%
보조금 정산잔액	6,262	2.27%	5,441	1.87%	4,326	6.33%
증감액	821	15.09%	1,115	25.77%	-5,795	-57.26%
예비비	122,246	44.34%	186,930	64.39%	18,475	27.03%
증감액	-64,684	-34.60%	168,455	911.80%	-13,699	-41.87%
합 계	275,672	100.00%	290,331	100.00%	68,345	100.00%
증감액	-14,659	-5.05%	221,986	324.80%	-53,495	-43.91%

당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75,67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59백만원 (5.05%)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분야별	2022년	2021년	2020년
일반공공행정	0.62	0.74	0.48
공공질서및안전	0.08	0.07	0.51
교육	0.00	0.00	0.00
문화및관광	0.97	1.37	1.61
환경	1.48	1.52	0.89
사회복지	0.06	0.07	0.05
보건	0.96	0.15	0.72
농림해양수산	1.13	0.77	0.9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43	0.76	0.42
교통및물류	5.73	3.26	1.20
국토및지역개발	1.42	0.42	0.46
과학기술	0.02	0.02	0.70
기타	4.28	2.43	1.68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타 분야는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지출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예비비 제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0개 사업 6,385백만원, 특별회계의 경우 1개 사업 10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감염병관리과	인력운영비(결핵관리 의사)	17	17	100
공공도시디자인과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13	13	100
관광진흥과	시민트리축제(전환)	300	300	100
관광진흥과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협의회 공동협력사업	12	12	100
광역행정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398	398	100
광역행정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4,024	4,024	100
노인복지과	노인 단기보호시설 설치	40	40	100
미래에너지산업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부대시설 저장소 설치	530	530	100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사업 지원(직접)	10	10	100
수산진흥과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육성	60	60	100
아동보호종합센터	인력운영비(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37	37	100
예산담당관	기관운영	20	20	100
외교통상과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추진	10	10	100
의회사무처	의원 의정활동 운영	18	18	100
인사과	직장교육 활성화	14	14	100
자치분권과	시민참여시정 활성화	10	10	100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62	62	100
총무과	보훈사업 지원(지원)	600	600	100
출산보육과	직장어린이집 확충	200	200	100
현대미술관	스마트 현대미술관 구축	10	10	100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	75	75	100
원자력안전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0	10	100

당년도의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예비비 제외)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의 33개 사업 2,669백만원에 비하여 사업수는 13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3,71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집행잔액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의 관행적 편성, 편성된 예산의 소극적 집행, 추경 시 적절한 감액결정 누락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최초예산 편성 시 과거의 집행잔액 발생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예산의 예측과 사용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당해예산				이월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H=D+E+ F+G)	비율 (H/A)
	보조금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명시 이월 (E)	사고 이월 (F)	계속비 이월 (G)		
2022년	5,284,715	5,087,710	182,090	14,915	6,803	2,386	-	24,104	0.46
2021년	5,771,974	5,535,802	229,360	6,812	10,287	1,253	-	18,352	0.32
2020년	5,656,003	5,523,945	107,460	24,598	8,736	96	233	33,663	0.73
2019년	3,765,255	3,655,793	82,970	26,492	7,439	1,032	-	34,963	0.93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103백만원 증가한 14,915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해연도 보조금수령액이 487,259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집행 금액 및 이월액 역시 각각 448,092백만원 및 47,270백만원 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이 전기대비 약 8.4% 감소할 동안 대비 보조금집행잔액은 전기대비 약 119% 증가하면서 보조금 수령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기대비 약 0.14%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일반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2022년	9,943	5,303	1,667	-	16,913
2021년	2,948	10,024	594	-	13,566

당년도의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3,34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수령액 (국비)	수령액 (시비)	계	미집행액	비율
창조교육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직접)	17,996	-	17,996	17,947	99.73%
투자유치과	지역투자촉진사업	7,800	-	7,800	6,435	82.50%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연제지구)	6,188	-	6,188	6,184	99.94%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직접)	1,085	-	1,085	1,040	95.85%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지원)	458	-	458	380	82.97%
도로계획과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999	-	999	935	93.59%
자원순환과	유기성폐자원(음식물)바이오 가스화 사업	300	-	300	300	100.00%

부 서	사업명	수령액 (국비)	수령액 (시비)	계	미집행액	비율
자원순환과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20	-	20	20	100.00%
장애인복지과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 지원	179	-	179	179	100.00%
물류정책과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101	-	101	101	100.00%
체육진흥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직접)	22	-	22	22	100.00%
수산정책과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15	-	15	13	86.67%
외교통상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직접)	14	-	14	13	92.86%

2) 개선 및 권고사항

당년도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집행이 용이하였음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경우 여건 및 사업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예산전용 과다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예산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전용 건수	67	43	45
예산전용 금액	1,877	1,446	3,216

최근 3년간 전용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전용 건이 과다하고,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는 무관한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의 비중이 전체의 19%로 착오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특정 사업에 속하지 않고, 각 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정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요인이 될 수 있어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은 목적외 사용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전용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목적, 횟수는 최소화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의 착오와 업무 추진의 편리성에 기인하는 전용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상황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통한 적정 소요액 반영으로 전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하여 전용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 예비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1)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총액	12,963,368	12,734,988	11,611,969
예비비 편성액	126,900	118,940	39,834
예비비	0.98%	0.93%	0.34%

최근 3개년 예비비 편성액을 비교할 경우 2020년의 경우 타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 5개 광역시 예비비 편성비율을 비교해보면 부산광역시는 타 광역시의 평균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타 5개 광역시의 예비비 편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예산총액	8,447,861	10,776,041	6,191,665	5,848,412	3,661,205
예비비편성액	30,000	16,975	27,700	36,430	14,000
예비비	0.36%	0.16%	0.45%	0.62%	0.38%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재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기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 편성 시에는 과거 예비비 편성대비 실제 지출액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7)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토 철저 및 사전설명 문서화 절차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일반예비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비비예산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2022년	126,900	9,164	6,745	770	7.22%
2021년	118,941	8,010	6,868	869	6.73%
2020년	39,834	21,849	21,492	323	54.85%

2022회계연도 126,900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의 7.22%에 해당하는 9,16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020년에 비하여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예비비 대비 지출비율이 평균 7%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의 경우 예비비예산 중 총 3건 585백만원을 예비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예비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미래에너지산업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부대시설 설치	시설비	60
미래에너지산업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부대시설 저장소 설치	시설비	470
공공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지원	연구용역비	55

한편, 부산광역시의 경우 예비비 사용시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 사전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그 취지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서화 된 보고형태가 아닌 구두 등의 형태로 사전협의를 구하고 있어 문서화 된 사전보고 절차를 구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8)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지출잔액 증가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개년 지출잔액 중 인건비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지출잔액	143,542	93,872	36,218
인건비	17,691	8,903	5,860
비율	12.3%	9.5%	16.2%

최근 3개년 지출잔액 중 인건비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기대비 당기 비율도 2.8%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출잔액 중 통계목 101-01(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81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잔액 사유의 경우 예산편성 시 급수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과다 편성, 담당자의 단순 계산오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 시 감액 미반영 등으로 사전에 지출잔액의 최소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인건비의 경우 통계목의 특성상 인원수 및 급수의 변동이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수당 등의 변동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12월에 이루어지는 정리추경 시 남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감액을 통해 지출잔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시 조정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9) 사고이월 된 예산의 불용액 관리 철저

1) 현황 및 문제점

2021년에 사고이월 된 예산 78,740백만원 중 당기 불용처리된 금액이 3,398백만원에 해당합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감소 및 공사기간 연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부서별 사고이월액 중 불용액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통계목	사고이월	불용
도시균형개발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	감리비	114	51
버 스 운 영 과	서면~충무 도시BRT구축 지원	시설비	245	57
보행도시정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	652	374
부산근현대역사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시설비	4,226	433
체 육 진 흥 과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500	1,350
체 육 진 흥 과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시설비	2,500	278
탄소중립정책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77	63
탄소중립정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05	614

2) 개선 및 권고사항

2021년도의 사고이월액은 2022년도에 적극 집행되어야 하나 2021년도 사고이월액 중 2022년도에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불용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도 일부 존재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본 사고이월액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이월검토 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차년도에 집행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월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의 검증 미비

1)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고 함) 제17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 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함)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재정법과는 별도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방보조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2023년에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존의 법해석과 관련하여서도 각 부서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신규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각 부서의 혼선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이 3억, 10억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감사인(검증기관)의 오류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관리함에 따라 실시간 보조금의 집행이 가능하고 잔액 반납에 있어서도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¹⁾함에 따라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 방식)으로 통합관리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운영(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7월 시범운영 후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이트(보탬e) 운영으로 인한 각 부서의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관장할 전담인력이 부족(보조금총괄 담당자 1명이 보조금 일반업무를 병행하며 담당하고 있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지방보조금법 제28조

2) 개선 및 권고사항

① 보조금 개정규정 이행 관련 총괄관리(전담인력) 필요성

지방보조금법은 2021년 처음 시행되어 2023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수많은 부서가 존재하나, 각 부서의 법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신규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혼선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의 질의회신 내용을 총괄하여 각 부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부서들이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정산보고서 등 법적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사항 안내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2023년 4월 개정된 내용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중복 검증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한 전담인력 필요성

지방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다르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정산보고서를 통해 사후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까지는 해당 통합관리망이 구축 중이었으며, 2023년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방보조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불필요한 문서작업 등의 업무를 생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규 사이트(보탬e) 운영시 시스템사용을 하는 각 부서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수많은 지방보조사업이 해당 사이트를 사용함에 따라 돌발상황 발생시 업무처리요령 등 대처를 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로 구성하여 시스템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2022회계연도 공사 및 용역의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공사계약		용역계약	
	공사금액	공사건수	용역금액	용역건수
총 계약금액	223,051	992	90,425	2,109
수의계약 금액	22,857	829	26,678	1,828
수의계약 비율	10.25%	83.57%	29.50%	86.68%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운영이 지방계약법 및 관련예규에 따라 적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시스템 운영, 수의계약시 요청사유서 징구, 5회 이상 수의계약 홈페이지 의무적 공개 등 수의계약 추진 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공사 수의계약내역을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최초 계약금액에서 증액되어 계약된 금액이 아래와 같이 발견되었으며, 최초계약금액 대비 차이비율이 높은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구분	계약부서	계약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 금액	차이 금액	최초 계약금액 대비 차이율
공사	건설안전시험 사업소	동서고가도로 배수관(물흙통) 설치공사	6,750	19,030	12,280	181.93%
공사	남항관리사업소	서방파제 물양장 모서리 보호공 정비공사	10,808	21,475	10,667	98.70%
공사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온천동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계약의뢰	22,651	35,325	12,674	55.95%
공사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8,800	27,686	8,886	47.27%
공사	낙동강관리본부	화명생태공원 농구장 정비 공사	52,599	76,701	24,102	45.82%
공사	국제수산물유통 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동 태풍피해 지붕 마감재 해체공사	38,247	55,145	16,898	44.18%
공사	회계재산담당관 (발주 : 버스운영과)	노포동 환승센터 포장 정비 공사	9,468	13,090	3,622	38.26%
공사	건설안전시험 사업소	화명IC B-RAMP 신축이음 보수공사	18,100	24,620	6,520	36.02%
공사	건설안전시험 사업소	녹산대교 유지보수공사	145,817	194,567	48,750	33.43%
공사	회계재산담당관 (발주 : 갈매동부산수산)	갈매길15분 버스킹 공연장 조성사업	85,703	114,060	28,357	33.09%
용역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구관 내진보강 건축공사 건설폐 기물처리용역	25,700	65,183	39,483	153.63%
용역	시립미술관	BMA 부산미술 소장품기획전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전 영상장비 임차	11,500	27,395	15,895	138.22%
용역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관리팀 사업장 관리차량 임차	3,000	6,000	3,000	100.00%
용역	회계재산담당관 (발주 : 버스운영과)	용역 계약의뢰[주례교차로~ 개금사거리간 BRT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 혼폐)]	38,457	66,410	27,953	72.69%
용역	국제수산물유통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상반기 청사 실내외 소독방역 용역	35,296	59,402	24,106	68.30%
용역	건설본부	전기1팀[문전교차로 지하차도 (하행)건설 전기공사 전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850	1,417	567	66.71%
용역	낙동강관리본부	화명생태공원 농구장 정비 공사(폐기물)	31,750	51,301	19,551	61.58%
용역	회계재산담당관 (발주 :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실현 국민 결의 대회 행사 용역	19,738	31,354	11,616	58.85%
용역	남항관리사업소	2022년 부산946호(청항선) 선체 정기수리용역 계약의뢰	12,789	19,837	7,048	55.11%

구분	계약부서	계약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 금액	차이 금액	최초 계약금액 대비 차이율
용역	회계재산담당관 (발주 : 체육진흥과)	사직종합운동장 족구장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28,108	39,500	11,392	40.53%
용역	건설안전시험 사업소	2022년 직영포장(3차) 페아스콘 운반용역	78,375	108,486	30,111	38.42%
용역	건설안전시험 사업소	2022년 직원 및 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건의(수정)	4,000	5,504	1,504	37.60%
용역	금정소방서	금정소방서 석면제거 폐기물 용역	4,947	6,475	1,528	30.89%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될 수 있어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절차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과 다르게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계약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및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계약사례는 최초 계약금액에서 최종 계약시 금액이 증액된 사례로서 과업물량 증가와 단가변경으로 인한 증액요청,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부서들간의 협의부족 외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는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과 상이한 것이 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공사와 관련한 변수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계약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계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 시에는 각 발주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하지 못할 변수에 대비하여 원가계산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만큼 원가 산정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외 수의계약 지양

1) 실태와 문제점

부산광역시에서 2022년 및 2021년 민간과 진행한 용역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율
총 용역 합계	거래건수	2,109건	2,395건	-11.94%
	거래금액	904억원	909억원	-0.55%
수의계약 합계	거래건수	1,828건	2,188건	-16.45%
	거래금액	267억원	338억원	-21.01%
관외 수의계약	거래건수	216건	280건	-22.86%
	거래금액	35억원	65억원	-46.15%

2022년 총 용역건수 2,109건 계약금액 904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민간업체와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의계약은 1,828건(총 계약건수 比 86.68%), 계약금액 267억원(총 계약금액 比 29.5%)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수의계약 시 홈페이지 공개 : 기존 연간 5회 이상 → 매 5회마다 공개
- ▷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징구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비중은 2021년 87.2%, 2022년 88.18%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전년 대비 관외 수의계약의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 부산광역시 관외 용역 수의계약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 용역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다수의 용역계약이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적합한 관내업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관련한 2022년 예산은 약 3,056억원으로 편성되어 거의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버스운영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이용요금의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자가 감소, 최근 폭등하는 물가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회사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초로 하여 버스 운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2019년에 산정한 것으로 2023년에는 새롭게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버스회사의 손익구조 상 인건비가 전체 원가 중 60%를 상회하고 있어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19년 대비 인건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준공영제로 인한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지원금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이 약 19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마을버스의 노선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부산광역시에 있지 않으므로 중복노선으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 마을버스 회사의 자체적 운행에 따른 배차간격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통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요금 무료화,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빅데이터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및 자율주행 서비스 실현,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과제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예산이 부족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버스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이 또한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쉽게 인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일반 간선버스만을 준공영제로 운영함에 따라 마을버스에 추가적인 환승할인제도 예산편성 등 투입되는 예산 대비 준공영제에 따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으나, 부산광역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중교통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타 경제에 대한 영향, 환경문제 등 다른 분야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부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가 대중교통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노선개편 및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 및 환경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함에 따라 다른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부산광역시에서 준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통해 시민부담 경감, 이동환경 개선, 이용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부산광역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노선 개편, 이용요금의 정상화 등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1) 결산액과 잔액증명서의 대사

2022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은 129,601백만원으로서, 이는 부산광역시금고 보관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2)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의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세입결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비율 (C/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①)	2,547,853	2,573,581	2,544,443	99.86%	276	28,862
당해연도(②)	2,635,864	2,683,016	2,638,307	100.09%	5,023	39,686
전년도比 (②-①)	88,011	109,435	93,864	0.23%	4,747	10,824
증감률(%) [(②-①)/①*100]	3.45%	4.25%	3.69%	0.23%	1,719.93%	37.50%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09%로 전년도 예산현액 99.86%보다 0.23%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50%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812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605백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1,784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37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2>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추세를 살펴보면,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 대비 2022년 세입은 3.69%, 세출은 3.73%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39.94% 감소하였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5개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세 입		2,638,307	2,544,443	2,313,898	2,289,140	2,008,721
세 출		2,508,706	2,418,504	2,203,815	2,093,895	1,866,469
잉여금	소 계	129,601	125,939	110,083	195,245	142,252
	이월금	87,520	55,953	53,349	91,140	39,869
	보조금 실제반납금	53	6	74	3,053	236
	순세계잉여금	42,028	69,980	56,660	101,052	102,147

본 회계연도 수납액은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93,864백만원 증가한 것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경륜사업특별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축진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회계연도의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2,635,864백만원보다 2,443백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는데, 회계별로는 16개 기타특별회계 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회계에서 초과 수납되었고,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부족하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표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비율
2022년	2,635,864 (60,752)	2,683,016	2,638,307	5,023	39,686	98.33%
2021년	2,547,853 (57,068)	2,573,581	2,544,443	276	28,862	98.87%
2020년	2,317,621 (91,140)	2,343,163	2,313,898	480	28,785	98.75%
2019년	2,258,742 (49,186)	2,321,212	2,289,140	458	31,614	98.62%
2018년	1,976,797 (37,163)	2,049,999	2,008,721	149	41,129	97.99%

본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0,824백만원 증가한 것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표4〉 이월된 미수납액의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실제수납액 (가)=(나)+(다)	현년도 수납액 (나)	과년도 수납액 (다)	(다)/전년미수납 이월액 비율
2022년	2,638,307	2,633,285	5,022	17.4%
2021년	2,544,443	2,538,841	5,602	19.5%
2020년	2,313,898	2,303,178	10,720	33.9%
2019년	2,289,140	2,268,363	20,777	50.5%
2018년	2,008,721	1,996,810	11,911	35.9%

아래의 〈표5〉는 지난년도 미수납액 관리실태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95.13%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 사유는 납세태만과 납기미도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표5> 미수납액 관리실태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 유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자금 압박	납기 미도래	기 타
집 단 에 너 지	114	-	-	-	-	82	-	32
교 통 사 업	8,605	819	186	5,791	146	1,192	3	468
광 역 교 통	27,812	-	-	5,619	-	-	22,193	-
유 료 도 로	1,784	-	-	-	-	-	-	1,784
소 방	34	-	-	34	-	-	-	-
학교용지부담금	1,337	-	-	-	-	803	534	-
합 계	39,686	819	186	11,444	146	2,077	22,730	2,284

2) 개선 및 권고사항

① 미수납액 관리

이월 미수납액의 현황을 <표4>, <표5>와 같이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미수납액을 차년도에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2021회계연도까지는 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이었으나, 2022년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향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납기미도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외 기타의 미수납액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예산운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더욱 미수납액 징수 열의를 갖고 미수납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환급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재원을 운용하는 회계단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22년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1,842백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9,007백만원이며, 이 중 환급액은 8,502백만원으로 수납총액의 약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	대 상	반환금액	사유
1	사상구	주례2구역재개발정비조합	1,166	소송 판결
2	사상구	덕포1구역 재개발정비조합	1,106	소송 판결
3	영도구	동삼2구역 재개발정비조합	218	법원 판결 소급 적용
4	금정구	금정 더 유엘 프리미어	12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5	동래구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000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

위 내역 중 1번과 2번의 경우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임의면제 조항과 관련된 소송판결에 따른 반환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반환금 집행은 정당한 절차이나 판결문의 내용이 원고(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주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고(부과관청)가 임의면제조항에 대하여 해석 또는 반박하는 내용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2건 모두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로 행정절차를 종료한 것은 세입예산에 대한 보전절차이행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부담금반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바 보다 적극적인 세입금 보전노력과 법률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③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반환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202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0,376백만원이며 이 중 보상금수납금 27,613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존에 보상금을 받은 자 중 해당 재개발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보상금과 해당기간의 이자를 반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당기반환 보상금 중 약 200억원은 부산진구에 위탁한 보상사업에 대하여 반환받은 금액으로써 보상금의 반납은 2017. 9월부터 이루어졌으며, 2021. 12. 31. 까지 부산진구청이 반납받은 보상금은 170억 원 가량이며, 2022. 12. 2. 기준으로 200억 원 가량입니다.

이처럼 실제 보상금반환은 2017년부터 발생해 왔으나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사이에 보상금의 반납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2021년, 2022년에 몰아서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해당 보상금을 반환받을 시 적용한 이자율은 연(1%, 0.65%)를 적용하는 등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구군에 위탁한 보상금에 대한 반환시기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간집금계좌 정리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등은 지정된 특별회계금고계좌(중간집금계좌)를 통해 입금된 후 각 특별회계단위별 공용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집금계좌로 입금된 세입금액은 1주 이내에 해당 특별회계 공용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년 결산의 기준이 되는 2022년 12월 31일과 지방재정법상 이체가 허용된 2023년 1월 20일 현재의 모든 특별회계 중간집금계좌 잔고를 확인한 결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간집금계좌에 4,663,018원이 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남아있는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농협은행이 시금고인 시기부터 현재까지 넘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확한 세입예산 징수 및 관리에 문제점을 나타내는 사안으로써 조속히 해당 금액에 대한 출처 및 내역을 확인하여 세입처리하여 세입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⑤ 소방특별회계 불납결손액

당해연도 소방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4,81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불납결손액 처리액 5,023백만원의 약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회계 불납결손금은 과거 시크화재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유족보상금(부산광역시 패소)을 선지급 후 이에 대한 구상권 (부산광역시 승소)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간 다양한 회수 노력을 통해 일부금액을 회수하였으나 2022년 현재 무재산의 이유로 이를 불납결손 처리한 상태입니다.

비록 불납결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미수납 상태와 동일하게 채권회수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수납으로 관리하지 않고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4,815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손처리 하는 것은 채권 회수 의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소방특별회계의 과거 미수납액을 확인해보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미수납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해오다 당해연도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은 미수납액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바 미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구분을 통해 불납결손 처리를 하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강화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통한 미수납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나.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의 5년간 결산 추세는 <표1>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비율 1과 비율 2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비율 1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편성과 지출의 합리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기 이후의 세출예산 편성과 예비비 책정에 반드시 준거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수치이며, 비율 2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입니다.

비율 1은 2021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율 2는 역시 2021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세출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계획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표1〉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지출	이월액 (B)	집행잔액 (C)	비율 1 (C/A)	비율 2 (B+C)/A
2022년	2,635,864	2,508,705	87,521	39,454	1.5%	4.8%
2021년	2,547,853	2,418,504	60,753	68,067	2.7%	5.1%
2020년	2,317,621	2,203,815	57,069	55,964	2.4%	4.9%
2019년	2,258,743	2,093,895	91,140	68,015	3.0%	7.0%
2018년	1,976,797	1,866,469	49,186	60,906	3.1%	5.6%

한편 16개의 각 특별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850	260	1,110
경 료 사 업						
의 료 급 여 기 금				38	1,000	1,038
교 통 사 업				518	2,524	3,042
광 역 교 통 시 설				21	128	149
공 영 차 고 지 조 성 사 업					171	171
도 시 철 도 사 업		365		772	386	1,5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1,838	76	1,914
유 료 도 로					457	457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1	10		216	1,432	1,659

구분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재 정 비 축 진					492	492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1,511	1,511
화 력 발 전 지 역 개 발				3	419	422
소 방		6		4,349	2,566	6,921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	18,264	18,265
국 민 주 택 사 업			18		762	780
합 계	1	381	18	8,606	30,448	39,454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주로 지출잔액 및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설정된 상황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설정기준을 초과한 것에 기인합니다.

〈표3〉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초과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예비비 설정한도(1%)	예비비	초과액	초과율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25,375	254	260	6	2%
공 영 차 고 지 조 성 사 업	12,643	126	170	44	35%
유 료 도 로	39,631	396	457	61	15%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45,910	459	1,432	973	221%
재 정 비 축 진	25,492	255	492	237	93%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2,012	20	1,511	1,491	7,455%
화 력 발 전 지 역 개 발	1,681	17	419	402	2,365%
학 교 용 지 부 담 금	59,904	599	18,264	17,665	2,949%
국 민 주 택 사 업	38,347	383	762	379	99%

2) 개선 및 권고사항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예비비 편성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월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최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예비비를 설정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바 예비비 편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여전히 높은 비율로 예비비 편성한도 초과금액이 나타나는 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향후 추경 편성시 감액 등 예비비 관련 예산을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에 반영하는 등 세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별회계에 반영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등 세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 경륜사업특별회계

1) 현황 및 문제점

경륜사업특별회계는 경륜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계단위입니다.

경륜·경정법 및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경주 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준비금과 법정의무 적립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지출액	법정의무적립액	미달적립액	법정비율
손실보전준비금	81	894	813	승자투표권 발매금액x5/1000
사업준비금	838	1,073	235	승자투표권 발매금액x6/1000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출예산은 최대한 필요한 것에 편성되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에 있어 법정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대부분은 스포원에 대한 전출금이며, 법정 준비금 적립액은 의무적립금액에 미달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적립비율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륜사업의 비정상적 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나,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법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고려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 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계단위입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특별회계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이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교부하는 비용 및 각종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등입니다.

2022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수납액	세입 (기타회계전입금)	세출지출액	세출 (예탁금)
금 액	45,872	37,467	44,082	15,000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편성은 해당 목적사업에 적시에 사용되도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고 정교하게 편성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위 표와 같이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 중 기타회계전입금과 예탁금과 같은 내부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예탁금에 예치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전체로 볼 때 결과적으로 타 회계로부터 과도한 전입금을 수령함에 따라 정작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제 사업의 수행가능성과 시기별 비용 발생규모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거래로 인한 세입예산과 내부거래 세출예산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기금에 관한 사항

(1) 기금의 조성액 및 기금별 사용비율

본 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과 전년도 말 조성액의 합계액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과 사용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년도중 조성액(B)	당년도중 조성총액 (C=A+B)	당년도중 사용액(D)	사용비율 (E=D/C)	당해연도말 조성액 (F=C-D)
계	1,031,914	1,207,751	2,239,665	1,165,897	52.1%	1,073,7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9	742,278	744,787	593,420	79.7%	151,367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050	2,292	3,342	2,012	60.2%	1,330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2,290	1,532	33,822	19,000	56.2%	14,822
중소기업육성기금	162,522	44,888	207,410	55,413	26.7%	151,997
투자진흥기금	156,229	4,510	160,739	14,992	9.3%	145,747
남북교류협력기금	9,397	219	9,616	0	0.0%	9,616
자활기금	10,246	394	10,640	427	4.0%	10,213
재해구호기금	38,142	199,806	237,948	224,564	94.4%	13,384
식품진흥기금	14,621	1,795	16,416	1,997	12.2%	14,419
환경보전기금	14,918	5,340	20,258	2,679	13.2%	17,579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921	3,437	4,358	3,200	73.4%	1,158
재난관리기금	80,171	46,458	126,629	95,214	75.2%	31,4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83,768	13,096	196,864	8,132	4.1%	188,732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86,251	3,006	89,257	13,269	14.9%	75,988
문화진흥기금	104,776	4,379	109,155	33,133	30.4%	76,022
체육진흥기금	56,204	14,444	70,648	1,288	1.8%	69,360
지역개발기금	76,977	118,860	195,837	97,157	49.6%	98,680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922	1,017	1,939	0	0.0%	1,939

기금별 과거 3개년도 사용비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과거 3개년도 기금별 사용비율 현황

연번	기금명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7%	99.5%	96.63%
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60.2%	69.6%	65.97%
3	집단에너지시설기금	56.2%	3.6%	0%
4	중소기업육성기금	26.7%	22.6%	18.07%
5	투자진흥기금	9.3%	17.3%	5.54%
6	남북교류협력기금	0.0%	0.0%	0.03%
7	자활기금	4.0%	3.0%	3.79%
8	재해구호기금	94.4%	79.6%	85.60%
9	식품진흥기금	12.2%	5.9%	13.90%
10	환경보전기금	13.2%	12.8%	23.11%
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73.4%	78.4%	82.55%
12	재난관리기금	75.2%	32.1%	83.07%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1%	4.4%	5.54%
14	양성평등·출산지원및 청소년육성기금	14.9%	11.8%	10.48%
15	문화진흥기금	30.4%	31.8%	20.44%
16	체육진흥기금	1.8%	3.8%	10.86%
17	지역개발기금	49.6%	54.0%	75.33%
1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0.0%	54.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도부터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운용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해연도 조성 총액 대비 사용비율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20%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연도별 재정적인 불균형과 단기적 또는 장기적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금의 대한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3개년간 사용비율 현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사용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기금의 설치사유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므로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분야 및 대상의 확대 등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기금예치 현황

기금별 당해연도 조성액에 대한 예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기금예치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당해연도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기업 자유예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1,367	149,211	0	0	2,156	0	0
대 학 및 지 역 인 재 육 성 기 금	1,330	0	0	0	1,330	0	0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4,822	0	0	0	476	0	14,346
중소기업육성기금	151,997	0	0	0	18,072	7,190	126,735
투 자 진 흥 기 금	145,747	0	0	0	21,358	0	124,389
남북교류협력기금	9,616	2,332	0	0	1	0	7,283
자 활 기 금	10,213	900	0	0	866	0	8,447
재 해 구 호 기 금	13,384	0	0	0	3,384	10,000	0
식 품 진 흥 기 금	14,419	1,500	15	0	2,736	0	10,168

기금명	당해연도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기업 자유예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환 경 보 전 기 금	17,579	0	0	0	4,743	0	12,836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158	0	0	10	1,148	0	0
재 난 관 리 기 금	31,415	15,000	0	0	16,415	0	0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188,732	18,700	203	0	4,063	0	165,766
양성평등·출산지원 및청소년육성기금	75,988	3,151	13	1	10,214	0	62,609
문 화 진 흥 기 금	76,022	164	2	588	45,115	0	30,153
체 육 진 흥 기 금	69,360	1,886	0	0	2,412	0	65,062
지 역 개 발 기 금	98,680	50,000	0	0	48,680	0	0
관 광 마 이 스 육 성 진 흥 기 금	1,939	0	0	0	1,939	0	0
합 계	1,073,768	242,844	233	599	185,108	17,190	627,794
예 치 비 율	100%	22.62%	0.02%	0.06%	17.24%	1.60%	58.47%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기금이 관리될 경우 입출금내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상기 예금계좌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금잔액증명서 기준일자 준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상 기금 결산시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일자는 2023년 1월 20일입니다. 결산서에 첨부된 부산광역시금고(부산은행 부산시청지점)에서 발행한 2022년도 기금별 잔액증명서상의 기준일자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월 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하므로 일반회계와 동일한 기준일(2023년 1월 20일)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의 결산일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의 향후 소송 전망에 따라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사건의 배상금 지급예정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진행 중인 소송사건 중 해당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일부패소에 따른 배상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전액 소송부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기 납부한 공탁금이 재판결과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보다 커 실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은 보증금으로 계상하고 배상금은 소송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 성과지표 달성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2022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을 세웠으며, 33개의 전략목표와 238개의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238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4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성과달성도를 총괄하면 달성 360건, 초과달성 58건, 미달성 34건으로 요약됩니다. 미달성한 성과를 일부 보고한 부서 가운데는 전년대비 정책사업 결산액이 증가한 실·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관, 시민건강국,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행정자치국, 디지털경제혁신실, 미래산업국, 청년산학국환경물정책실,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검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며 정책사업과 재정지출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1) 성과지표가 당해 정책사업목표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2) 지속적,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측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으로 성과지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실제 사용되는 지표가 전체사업에서 극히 일부의 성과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없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특별한 노력 없이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다수 발견되었고, 작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나 당기목표 수준을 전기 수준으로 과소하게 설정하여 초과달성한 부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고 함)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여 안이한 목표설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분도시기획단의 경우 측정산식을 ‘시범 생활권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측정산식으로 하였으나 용역의 수행건수 등 구체적인 측정치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목표를 ‘80’으로 한 후 실적치를 ‘1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도를 “달성”으로 보고한 사업 가운데는 목표치 설정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한 경우로 기술심사과의 경우 2021년도와 2022년도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전년도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전년도 실적치를 크게 하회하는 값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2022년도에도 100%를 크게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율로 설정하는 실적 측정에 있어 분모가 되는 수치를 낮게 설정하여 실적치가 목표 이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설정한 목표치를 사업 진행 중에 수정하여 실적이 높게 표현되도록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성과실적치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성과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과 전년도 실적치와 동일하게 당해 실적치가 표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일치될 수도 있으나, 일부는 성과보고서 작성시까지 실적치가 나오지 않아 유사한 수치 또는 목표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목표치만큼 표시하고, 달성률을 100% 인식한 사항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담당관의 경우 목표치가 '22', '77' 등 구체적인 수치인 상황에서 실적치 또한 '22', '77.1'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까지만 실적을 입력하였거나, 목표치를 달성한 후 해당 업무의 수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 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어 사후에 적절히 확인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 초과 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며,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원인 관계를 확인한 결과 원인이 적절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표1〉 성과지표 달성 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3	238	452	58	360	34	15,155,890	14,695,899	459,991
의 회 사 무 처	1	1	3	0	3	0	18,798	16,299	2,499
감 사 위 원 회	1	2	6	0	6	0	737	1,075	-338
성비위근절추진단	1	1	1	0	1	0	353	0	353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2	6	1	5	0	10,693	936	9,757
대 변 인	1	4	4	1	3	0	15,547	14,180	1,367
기 획 관	1	7	13	2	11	0	19,511	18,290	1,221
재 정 관	1	5	10	1	8	1	1,983,283	1,604,148	379,135
시 민 안 전 실	1	6	13	3	10	0	173,741	179,286	-5,545
시 민 건 강 국	1	4	10	1	8	1	340,438	220,391	120,047
도 시 균 형 발 전 실	1	8	14	0	13	1	241,121	306,985	-65,864
도 시 계 획 국	1	9	21	4	16	1	468,499	411,403	57,096
건 축 주 택 국	1	6	13	1	11	1	352,808	245,915	106,893
교 통 국	1	17	24	6	15	3	1,753,016	2,005,491	-252,475
문 화 체 육 국	1	12	31	6	18	7	410,290	394,920	15,370
관 광 마 이 스 국	1	9	16	3	11	2	84,523	68,680	15,843
사 회 복 지 국	1	6	10	3	6	1	4,861,412	5,122,289	-260,877
여 성 가 족 국	1	11	25	1	22	2	1,039,470	981,224	58,246
행 정 자 치 국	1	11	22	1	20	1	174,160	155,532	18,628
부울경특별자치단체 합 동 사 무 국	1	2	2	0	2	0	830	635	195
금 융 창 업 정 책 관	1	4	8	2	6	0	56,239	0	56,239
디 지 털 경 제 혁 신 실	1	14	22	5	16	1	422,655	421,646	1,009
미 래 산 업 국	1	12	20	1	18	1	246,665	214,980	31,685
청 년 산 학 국	1	11	16	3	11	2	1,073,397	939,934	133,463
2030엑스포추진본부	1	7	14	4	10	0	33,391	0	33,391
신 공 향 추 진 본 부	1	2	3	1	2	0	6,251	8,029	-1,778
환 경 물 정 책 실	1	23	34	2	27	5	371,790	422,613	-50,823
해 양 농 수 산 국	1	16	33	2	29	2	173,138	167,680	5,458
소 방 재 난 본 부	1	20	43	1	41	1	757,650	697,766	59,884
인 재 개 발 원	1	1	2	0	2	0	7,986	7,782	204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	1	3	0	3	0	20,503	20,344	159
농 업 기 술 센 터	1	1	3	0	3	0	6,290	17,475	-11,185
건 설 본 부	1	1	2	1	1	0	10,475	10,548	-73
낙 동 강 관 리 본 부	1	2	5	2	2	1	20,230	19,423	807

2)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계획 단계에서부터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작성기준”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사업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은 물론 예산의 크기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목표와 무관한 지표가 설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를 사용할 때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족도 설문조사 시 표본 선정이 모집단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조사가 설계되어야 하며 설문조사자는 객관성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조사 설계에도 불구하고 표본에 한계가 있다면, 조사결과를 성과달성도 측정에 사용할 때 상응하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나 중장기 계획, 유사사업, 전국수준에 비추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목표치 설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실적치를 목표치 만큼 표시하고, 차후년도에도 유사한 목표치 만큼만 잡아 전기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되도록 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실제 달성을 하였는지, 목표치를 실제치로 수정하여 작성되지 않았는지,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운영 및 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여 각 실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 검토를 수행하거나, 각 실국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각 부서에서 e호조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물품관리 행정시스템으로 넘겨서 이를 물품담당부서에서 등록된 물품을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품관리 행정시스템에서는 기간별 또는 부서별 자산취득가액 합계를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일일이 집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재물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담당자 한 명이 소방서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전체의 물품을 관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물품관리 행정시스템에서 기간별·부서별 자산취득 물품가액 확인 시 일일이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 행정시스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관리 행정시스템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부서에서 구입한 물품내역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물품관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 물품 구입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물품담당자가 구입한 물품이 물품관리 행정시스템상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전체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 차원에서부터 올바른 물품관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 물품담당자에게 물품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부서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물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